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청소행정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
----------	-----

제출년월 : 2025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18년 1월 1일 인상 이후 7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인건비, 유류비, 장비유지비 등의 상승으로 실제 서비스 원가와 현행 수수료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 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1)

- 1) 기본요금( $0.75\text{m}^3$ ) 2,100원(9.3%)인상 (22,500원 → 24,600원)
- 2) 초과요금( $0.1\text{m}^3$ ) 365원(17%)인상 (2,150원 → 2,515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25. 9. 25. ~ 2024. 10. 15. (20일간)
-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 단위 : 원 ]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 단위 : 원 ]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뇨	18ℓ	28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 <sup>3</sup>	<u>22,500</u>
	초과	0.1m <sup>3</sup> 당	<u>2,150</u>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뇨	18ℓ	28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 <sup>3</sup>	<u>24,600</u>
	초과	0.1m <sup>3</sup> 당	<u>2,515</u>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비고)

1. 야간할증 : 야간 청소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2. 지하할증 : 지하2층 이하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여 자체가압펌프 사용 시 할증 적용 제외
3. 지하·야간·공휴일 할증 중복 적용 시 최대 7%로 한다.

(비고)

1. 야간할증 : 야간 청소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2. 지하할증 : 지하2층 이하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여 자체가압펌프 사용 시 할증 적용 제외
3. 지하·야간·공휴일 할증 중복 적용 시 최대 7%로 한다.

-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 대상 아님
- 6) 물가대책위원회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하수도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에 관하여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